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46
----------	-----

2018년 12월 18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.10.2. 김희걸 의원(송명화 의원 외 17명 찬성)

나. 회부일자 : 2018.10.29.

다. 상정 일자 : 제284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

- 2018년 12월 18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정책연구위원회 명칭이 ‘정책위원회’로 변경(2018.1.4.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책연구위원회,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명칭을 변경함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(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참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)의 입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·관리하는 ‘정책연구위원회’가 2018.1.4일자로 ‘정책위원회’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관련 자구를 수정하고자 제안됐음.

2 ‘정책연구위원회’를 ‘정책위원회’로 명칭 변경(안 제4조)

- 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)의 자치법규 입안을 포함한 의정활동 지원과 각종 정책연구 업무를 심의·관리하기 위해 의원과 관련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·운영되고 있음.
 - 정책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▶주요 의안 발굴·조사·연구에 대한 심의 ▶의원 요청 입법안 검토·심의 ▶시민 입법청구 심의 ▶주요시책사업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▶입법정책 연구용역(이하 “연구용역”) 과제 심의 및 선정 등임.
- 2004년 5월 처음 ‘정책연구위원회’란 명칭으로 설치·운영된 이후 2018년 1월 정책 업무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‘정책위원회’로 그 명칭을 변경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므로, 이를 신속히 반영해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.

<표-1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연구용역 기본계획) ①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 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정책 연구위원회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	제4조(연구용역 기본계획) ①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 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위원장 -- ----- ----- -----.
②~④ (생략)	②~④ (현행과 같음)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기존의 ‘정책연구위원회’가 2018년 1월 ‘정책위원회’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 간 위원회 명칭 통일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관련자 혹은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, 자치법규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토 론 요 지 : 생략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)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희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4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0월 2일

발 의 자 : 김희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송명화, 송정빈, 김정환, 황인구,
김상진, 이정인, 김용연, 김인호,
추승우, 김종무, 최기찬, 김재형,
송아량, 김소양, 김달호, 권수정,
문장길, 전석기 의원(18명)

1. 제안 이유

정책연구위원회 명칭이 '정책위원회'로 변경(2018. 1. 4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가. 정책연구위원회,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명칭을 변경함 (안 제4조).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(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참조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연구용역 기본계획) ① <u>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</u> 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연구용역 기본계획) ① <u>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위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